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29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장종태 · 서미화 · 조승래
김남근 · 이개호 · 임호선
김재원 · 최기상 · 안호영
이수진 · 정춘생 · 김영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바이러스 간염(B형·C형)은 세계적인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암종별 사망률 2위인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 또한 바이러스 간염은 치료 시기를 놓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감염성간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간염연구사업, 감염성간염예방사업, 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감염성간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성간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C형간염

2. “감염성간염관리”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치료와 감염성간염 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성간염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감염성간염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

으로써 감염성간염을 예방하고 감염성간염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감염성간염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성간염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염성간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감염성간염관리 체계 구축
3.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4. 감염성간염관리에 필요한 자원 조달
5. 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염성간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 감염성간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성간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감염성간염연구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감염성간염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성간염예방사업)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감염성간염 예방수칙의 개발과 보급
2. 감염성간염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사업 개발
3. 감염성간염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4. 감염성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5. 그 밖에 감염성간염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성간염의 발생 위험요인과 감염성간염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감염성간염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제1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사항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와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감염성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감염성간염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